

忠清北道議會에서의 證言·鑑定等に 關한 條例案

檢 討 報 告

1992. 12.

條例整備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忠清北道議會에서의 證言·鑑定等に 關한 條例案

檢 討 報 告

1. 發議者：李光浩 議員外 8人

2. 發議日字 및 回附日字

가. 發議日字 : 1992. 12. 14

나. 回附日字 : 1992. 12. 14

3. 提案理由

忠清北道議會에서 實施하는 行政事務監査 또는 調査를 實效性 있게 實施하려면 關係 書類의 提出 및 證言·鑑定 등이 必要하며, 國會가 國家委任事務에 대한 監査의 일부를 地方議會에 委任할 경우에는 國會의 권한에 버금가는 강제력을 가져야 함이 당연한바,

이 條例案을 提案함.

4. 主要骨子

가. 忠清北道議會는 監査나 調査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鑑定人의 出席, 鑑定等を 要求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 (案 第2條)

나. 公務上의 비밀을 理由로 證言이나 書類의 提出을 거부할 수 없음.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關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主務局長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의 提出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案 第4條)

- 다.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出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命令狀을 발부하여 동행을 명령할 수 있음 (案 第6條)
- 라. 證人·鑑定人이 證言·鑑定을 하는 경우에 宣誓하도록 함 (案 第7條)
- 마. 證人은 辯護士을 帶同하여 憲法 및 法律상의 권리에 대한 助言을 받을 수 있음 (案 第9條)
- 바.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檢證을 할 수 있음 (案 第10條)
- 사. 正當한 이유없이 出석하지 아니한 證人, 報告 또는 書類提出要求를 거부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月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 (案 第12條)
- 아. 證人이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忠淸北道議會의 權限을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한 때에는 3月이하의 懲役に 處하도록 함 (案 第13條)
- 자. 證人·鑑定人이 虛偽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3月이하의 懲役に 處하도록 하되,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4條)
- 차. 忠淸北道議會는 證人·鑑定人등이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며, 다만 自白이 있는 경우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카. 條例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議會 規則으로 정하도록 함 (案 第16條)

5. 檢討意見

忠淸北道議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關한 條例案을 檢討한바,
 忠淸北道議會에서 實施하고 있는 行政事務監査 또는 調査 活動에 있어 忠淸北道議會의 權限있는 強制力을 隨伴하여 效率性있게 實施하려는 內容으로서 本 條例 制定은 當爲性으로 볼때 큰 意味와 現實的 必要性이 있는것으로 本 條例案의 制定은 妥當한 것으로 思料됨.

6. 別 添

忠清北道議會에서의 證言·鑑定 等に 關한 條例案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이하 감사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출석등의 의무) 의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충청북도와 그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국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의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지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이 조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참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군 교도소 또는 군 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증인·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 반장 또는 소위원장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의 요구를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와 그 소속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여비·수당의 지급)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 (불출석등의 죄) ①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 (의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등의 죄)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의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①의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 명의로 한다.

제16조 (의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